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. 3. 30 선고 2021가합13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국

변 론 종 결 2022. 3. 16.

판 결 선 고 2022. 3. 3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2020. 9. 17. 체결한 별지 목록 제2, 4, 5, 7,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
신탁계약과 2020. 9. 29. 체결한 별지 목록 제1, 3, 6,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각
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, 4, 5, 7,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
이천등기소1) 2020. 9. 17. 접수 제45131호로 마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
목록 제1, 3, 6,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2) 2020. 9. 29. 접수

제47156호로 마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소유하고 있었다.

나. 원고는 2019. 6. 13. C으로부터 이천시 D 등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(이하 ‘이 사건 공사’라 한다)를 공사대금 6억 9,600만 원(부가가치세 별도), 공사기간 2019. 6. 17.부터 2019. 10. 30.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.

다.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.

순번	부동산	등기일자	접수번호	등기원인
1	별지 목록 제2, 4, 5, 7, 9항 기재 각 부동산	2020. 9. 17.	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45131호	2020. 9. 17.자 신탁
2	별지 목록 제1, 3, 6, 8항 기재 각 부동산	2020. 9. 29.	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47156호	2020. 9. 29.자 신탁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, C은 그 공사대금 중 3억 4,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. 한편, C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는데,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된 피고와 C 사이의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, 피고는 위와 같은

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등 사해행위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·입증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).

2) 살피건대,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,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,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C에게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거나, C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던 것이라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·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,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)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준석, 판사 이강호, 판사 허준기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1. 이천시

대 307평방미터

2. 이천시

대 319평방미터

3. 이천시

대 307평방미터

4. 이천시

대 268평방미터

5. 이천시

대 33 평방미터

6. 이천시 동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

1층 65.4평방미터

2층 34.08평방미터

7. 이천시 동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

1층 65.4평방미터

2층 34.08평방미터

8. 이천시 동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

1층 65.4평방미터

2층 34.08평방미터

9. 이천시 , 동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

1층 65.4평방미터

2층 34.08평방미터

이상.

1)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에는 ‘대전지방법원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, ‘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’의 오기로 보이므로,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행하여 판단한다.

2) 각주1) 기재와 같다.